

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05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‘19년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정원 반영에 따른 조정 및 현장중심의 인력 배치를 위해 관련 자치법규를 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(안 제2조)

-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: 677명 → 699명 (증 22명)
  - 집행기관의 총수 : 665명 → 687명 (증 22명)
  -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: 12명 (변동없음)

나. 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일부 조정(안 별표 3)

- 총 계 : 677명 → 699명 (증 22명)
- 정 무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- 일 반 직 계 : 653명 → 674명 (증 21명)
  - 4급·4~5급 : 4명 (변동없음)
  - 5급 : 29명 (변동없음)
  - 6급 이하 : 619명 → 640명 (증 21명)
  - 전문경력관 : 1명 (변동없음)

- 연구 직 계 : 3명 (변동없음)
- 지도 직 계 : 19명 → 20명 (증 1명)
- 별 정 직 계 : 1명 (변동없음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(관계법령 발췌)

나. 예산조치 : 붙임(비용추계서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 : 생략(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)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3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- 4) 규제심사 : 비규제

평창군 조례 제 호

##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677명”을 “699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65명”을 “687명”으로 한다.
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평창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기관별					
	총 계	본 청	의회사무과	직속기관	사업소	읍·면
총 계	699	699				
정무직 계	1	1				
군 수	1	1				
일반직 계	674	674				
4급	1	1				
4~5급	3	2		1		
5급	29	13	2	5	1	8
6급 이하	640	640				
전문경력관 소계	1	1				
연구직 계	3	3				
연구관						
연구사	3	3				
지도직 계	20	20				
지도관	1			1		
지도사	19	19				
별정직 계	1	1				
6급상당	1	1				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정   안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평창군에 두 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 원”이라 한다)의 총수는 <u>677명</u> 으로 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<u>665명</u></p> <p>2. (생   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----- ----- ----- <u>699명</u>--- -----.</p> <p>1. ----- <u>687명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# 비 용 추 계 서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가. 비용발생 요인 : 공무원 정원 22명 증가(677명 → 699명)
- 나. 관련조문 : 평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(정원의 총수)

## 2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추계의 전제
  - 1) 정원조정에 따라 증액되는 인건비에 대하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추계함.
  - 2) 보수인상을 연1.8%를 기준으로 연도별 인건비 부담액을 산정함.
- 나. 추계결과 : 1,133백만원 / 1년

구 분	금 액	산 출 내 역	비 고
증원	1,132,738천원	◦6급 30호봉 기준 ⇒ 72,954천원 × 4명 = 291,816천원 ◦7급 20호봉 기준 ⇒ 60,122천원 × 6명 = 360,729천원 ◦8급 8호봉 기준 ⇒ 41,744천원 × 9명 = 375,699천원 ◦9급 4호봉 기준 ⇒ 33,416천원 × 2명 = 66,832천원 ◦지도사 3호봉 기준 ⇒ 37,661천원 × 1명 = 37,661천원	

다. 채용조달 방안 : 자체채원 및 지방교부세 채용

## 3. 관련 의견

가.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자치행정과장 김명기
연락처	(033) 330 - 2210

## < 연도별 비용추계표 >

(단위 : 천원)

구 분	1차년도 (2019년)	2차년도 (2020년)	3차년도 (2021년)	4차년도 (2022년)	5차년도 (2023년)	계
세 입						
		해	당	없	음	
세 출	566,369	1,153,127	1,173,884	1,195,014	1,216,524	5,304,918
일반회계	566,369	1,153,127	1,173,884	1,195,014	1,216,524	5,304,918
재원 조달	566,369	1,153,127	1,173,884	1,195,014	1,216,524	5,304,918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566,369	1,153,127	1,173,884	1,195,014	5,304,918
	지방세	566,369	1,153,127	1,173,884	1,195,014	5,304,918
	세외수입					
지방채						
기 금						
공기업 특별회계						
기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

# 관계 법령 발취

## □ 지방자치법

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~⑥ (생략)

## 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30조(정원의 규정)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집행기관의 정원(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)

2.~3. (생략)

4. 의회사무기구의 정원

5. (생략)

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.

④~⑤ (생략)